

CORPORATE ANALYSIS REPORT OF NAVISTOCK

# CA RN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감사위원회 관련 상법 개정안 제안

작성자 : (주)네비스탁

작성일 : 2013년 6월 25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감사위원회 관련 상법 개정안 제안]**

법무부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위원회는 2013년 6월 14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집행임원제도의 보완, 감사위원회위원 선임과 해임의 합리화, 집중투표제도의 개선, 전자투표와 다중대표소송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 중 감사위원회 제도 관련한 상법의 정비는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남다르다고 할 것이다.

현행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를 선임한 이후 선임된 이사들 가운데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고 있으나, 의결권 제한이 없는 이사를 먼저 선출하고 그 가운데 감사위원을 선출하고 있으므로 지배주주의 의결권 제한에 한계가 있고,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신뢰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많았다.

하지만 금번 법무부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안을 통해 감사위원회위원과 이사를 분리하여 선임하고,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합산 3%로 제한하고, 감사위원회위원 해임에 대해서도 선임과 동일하게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 부분 개선되어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유지를 통한 감사 기능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장기적 기업 가치의 상승으로 연결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상법상 감사위원회 구성의 맹점**

하지만 이러한 감사위원회와 관련하여 그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기업으로 한정시킬 경우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안은 개정 취지를 충분히 완수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상법이 될 수 밖에 없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야 하며, 선임시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 제409조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제2항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는 둘 수 없다.

제393조의2 (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15조의2 (감사위원회) ①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그리고 현행 상법은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를 통해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다. 상장회사 특례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상근감사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제542조의10(상근감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고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이 절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가 이 절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2조의11 (감사위원회)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상근감사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적용된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이사회 내의 위원회일지라도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과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때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제542조의12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할 때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법의 맹점으로 인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상근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자산총액이

2조원에 달하지 않더라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과 해임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하며 이 때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하지만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의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상법 제415조 2의 규정에 따라 비상근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법 제 393조 2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을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는 맹점이 생겨난다.

이러한 맹점으로 인해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감사에서 감사위원회로 전환할 경우 이사회가 감사위원회를 직접 구성하고 지배하게 되어 독립적 감사가능이 오히려 저해되고 전체 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어 기업의 지배구조와 투명성은 더욱 악화된다.

### 왜곡된 감사위원회 구성의 사례

- 기업명 : 세동[KOSDAQ, 053060]

코스닥 상장기업 세동은 2013년 3월 29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012년 말 세동의 자산총액은 879억원이며 연결기준으로 931억원으로 1천억원 미만의 상장기업이다.

당시 세동의 일반 주주들의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중립적 감사 후보자를 상법에 따라 회사에 제출하였다. 2012년 말 세동의 최대주주는 윤정상 등으로 지분율은 57.46%(3,518,000주)에 달하였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3%로 제한 받게 되므로 주주제안에 따른 감사 후보자가 주주총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았다.

그러자 회사측에서는 정관 변경을 통해 감사위원회 구성을 시도하였고, 회사측의 의도에 따라 정관이 변경되어 감사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정당한 주주제안은 자동 폐기되어 주주총회에서 다뤄지지도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회사측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임을 내세워 감사위원회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즉, 경영의 투명성을 요구했던 주주들의 정당한 요구는 상법의 맹점으로 인해 묵살되었으며,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에 놓이게 되면서 기업의 지배구조는 더욱 폐쇄적으로 변하였다.

이에 당사와 세동의 주주들은 이러한 정관 변경과 감사위원회 구성이 전체 주주의 권익을 심대하게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법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기에 울산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결의 취소 등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사건번호 2013가합 3718) 아울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당사를 대표보고자로 하여 세동의 주주들은 경영 참여의

목적으로 6.9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공시한 상태이다.  
(2013년 6월 10일 기준)

**감사위원회 제도 보완의 필요성**

상법에 이와 같이 중대한 맹점과 하자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법무부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며, 상법개정위원회가 실제 상법이 해석되고 작동하는 현실을 주의 깊게 확인하지 못해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당사는 2013년 4월에 법무부 상사법무과를 통해 이러한 상법의 내용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즉,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의 상장기업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구성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였다. 그런데 당사의 질의에 대해 법무부는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의 상장기업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이사회 결의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3% 의결권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법무부 역시 이러한 상법의 개정 취지와 목적, 의도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맹점과 하자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1월 30일 상법을 일부 개정할 때 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재개정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아.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법 제542조의12 신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권이 주주총회에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선임방식을 일괄선출방식으로 통일하며, 위원 선임 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제한함.*

이처럼 법의 취지와 의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감사 기능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이는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도 일맥상통하는 바이다.

아울러 코스닥 상장기업 및 유가증권 시장 상장기업 가운데 중소형 기업의 경우 자산총액이 1천억원을 넘지 못하는 기업이 상당 수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중소형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전문적인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가 아니라 일반 개인 투자자가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소형 상장기업의 경영 투명성이나 최대주주 및 이사회에 대한 올바른 견제 장치는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횡령이나 배임, 회계 부정 등 올바른 견제 및 감시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기업이 부실화 되고 상당한 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 역시 대부분 이러한 중소형 상장기업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당사는 상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법무부가 위와 같이 현행 상법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지하여 이러한 폐해를 막을 수 있도록 상법을 정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